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매매 관련 타인 소유 차량의 표시·광고 시
소유자의 동의 의무화 등〉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44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제2209444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타인 소유 차량의 표시·광고시 소유자의 동의 의무화 등(안 제57조의2 제3항 신설 등)	2
2.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이력 등 정보 미제공 시 처벌 규정 신설(안 제58조제4항, 제80조제7의2)	13
3. 부칙	19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44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종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28.
3. 회 부 일 : 2025.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 매매 관련 타인 소유 차량의 표시·광고 시 소유자의 동의 의무 등(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개정안은 자동차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 소유 차량의 표시·광고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게재 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② (생략)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①·② (생략) <u><신설></u> ⑤ ~ ⑩ (생략)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포함한다. 이하 제58조제4항 및 제69조의5에서 같다)----- ----- -----. 1.·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판매·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현행	개정안
의 모니터링)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⑥ (생략) <신설>	의 모니터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같다</u>-----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u>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판매·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u> <u>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u>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⑥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u>7. 제69조의5를 위반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광고를 한 자</u> ⑥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최근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제3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매매하려는 광고를 게시하는 허위매물 의심 사례가 적발¹⁾되는 등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 시 사기 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365내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접수('23.6.~'25.5)된 민원 217건 중,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당근, 직거래 카페 등에서 매물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은 9건이 접수되었음.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²⁾하고 있으나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고차를 취급하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6개사³⁾를 조사한 결과('25.2~3.), 모든 플랫폼에서 비소유자도 광고글 게시가 가능하며, 소유자 동의 확인 절차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의 판매·알선 광고를 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3) (조사 대상) 당근, 보배드림, 중고나라, 헤이딜러, KB캐피탈, 엔카닷컴 총 6개社

1) 부동산에 대한 직거래플랫폼 자율규제와의 형평성 고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운영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① (적용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 또는 임대차하려는 부동산의 온라인 표시·광고 및 거래 시 적용

② (기본원칙)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에 대하여 제시

* 준법성, 신의성실의 원칙, 투명성 및 공정성, 이용자 보호, 분쟁 해결 노력

③ (플랫폼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플랫폼 이용자(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함

-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 또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2025. 2. 13.

한편 개정안은 개인간 자동차 직거래 시 소유자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

여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업계에서는 자동차 직거래 시에도 부동산 영역과 같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자율규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자동차매매업자 및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규정 적용 관련

개정안 제57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판매·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 대상은 일반 개인, 자동차매매업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등이 모두 포함됨.

이에 대하여 일부 업계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⁴⁾는 현행법에서 이미 자동차정보제공 의무, 거짓 정보 제공금지 등의 규제⁵⁾를 받고 있음에도,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온라인

4) 차량정보를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대표적 업체로는 헤이딜러가 있음.

5)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도 소유자 동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등의 온라인 정보제공 및 거래가 어려워지고, 이는 오히려 가족·지인 등을 대리하는 선의의 대리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개정안의 취지는 제3자가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광고 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소유자에게 소유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는 민법 제211조⁶⁾에 근거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과태료(제81조)

개정안 제84조제2항제7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으로 개정안 같은 조 제5항제10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광고를 하는 자에 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행위 및 광고게재 행위 등에 대한 처벌(안) >

대 상	과태료 수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광고를 한 자(제84조제5항제10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84조제2항제7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적으로 과태료 수준은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편차가 과도하면 제재조항 간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다만,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도 조항의 실효성 및 예방효과를 고려하여 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높게 설정할 필요도 있다는 점⁷⁾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과태료 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7)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11.

나. 관계 부처 및 업계 의견

1) 국토교통부

직거래 플랫폼 조사 결과, 모든 플랫폼에서 비소유자도 판매 광고를 게시 가능하며, 소유자 동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이 필요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함.

2) 당근마켓(주)

(규율대상 관련) 「자동차관리법」은 관리사업자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개인간 거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과잉규제) 플랫폼에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 확인 책임 부여는 과잉 규제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선의의 개인 간 거래위축이 우려됨.

* 부동산 영역에서와 같이 자율 가이드라인 운영 등 자율적 개선 유도 필요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법적 부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광고 게시물에 대하여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 있음.

허위 제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도 플랫폼의 과태료 부담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 이미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차단, 이용자 확인 등 규율체계 마련되어 있음.

3) 엔카닷컴(주)

(개정안 제57조의2, 제69조의5) 적용 대상을 매매업자 및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 제공자가 아닌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 있음.

(개정안 제84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반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정보서비스제공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과중함.

4) 피알앤디컴퍼니(주)(헤이딜러)

(안 제57조의2 제3항, 제69조의5 제1항)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로 문구 수정이 필요함.

현 개정안의 문구로는 개인의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중개하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제65조의2)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과 같은 C2B 거래까지 적용 시, 본인인증이 어려운 개인의 이용이 어렵게 되어 국민들의 편익을 침해할 우려 있음.

5)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안 제80조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고의성 있는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7조제3항제2호에서 판매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빠뜨리거나 축소·은폐하는 경우 이미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체결 전 구매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고지되고 있음.

6)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매매업자와 일반 개인에게 차이 없이 동일하게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고차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일반인은 과태료 50만원 이하, 매매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 필요함.

2.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이력 등 정보 미제공 시 처벌 규정 신설 (안 제58조제4항, 제80조제7의2)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허위로 제공한 자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④ <u>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u>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자동차매매업자</u> ----- ----- -----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u>허위로</u> 제공한 자 8. ~ 10. (생략)	제80조(벌칙)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 ----- <u>제공하지</u> <u>아니하거나 허위로</u> ----- 8. ~ 10.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이하 “자동차이력 등의 정보”이라 함)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8조제4항), 이를 허위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80조제7의2)⁸⁾.

개정안은 자동차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의 정보 게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하여 일부 업계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일부를 누락하더라도 개정안 제80조제7호의2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누락의 경우에도 2년 이

8)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④ 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 인터넷 광고시 게재 의무 사항(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

- ①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 ②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 ③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 ④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 ⑤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 ⑥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입법례를 살펴보면, 정보 등을 거짓으로 고지한 자와 고지하지 아니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법례와 차등하여 처벌하는 입법례가 모두 있음.

< 관련 자동차관리법상 입법례 >

구 분			처벌 수준
동일 처벌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표 고지 의무		
		거짓으로 고지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등 처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제공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법 제58조제1항⁹⁾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표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⁰⁾

한편, 현행법 제80조제9호의2에서는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84조제4항제22호의2에서는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¹¹⁾

9)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중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10)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11)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따라서 자동차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은 자동차이력 등의 정보 제공의 엄격한 이행을 확보함에 따른 소비자 보호 측면, 이력 정보 게재행위의 중요성,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관계 부처 및 업계 의견

1) 국토교통부

매매업자의 경우 자동차의 표시·광고 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여야 하나, 허위로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음.

이에, 매매업자가 이력·판매자 정보 등 게재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2) 엔카닷컴(주)

벌칙의 경우, 단순 누락의 경우도 처벌될 여지가 생기며, 처벌의 수위가 상당하여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로 수정이 필요함.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재와 같이 고의성 있는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무적으로 전산 오류나 실수 등으로 정보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사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3. 부칙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내용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확인 절차 마련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 수정을 수반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소비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므로 시행에 앞서 6개월 수준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의처
02)6788-5575

□ 조사 개요

- **(근거법)**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4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 **(조사 시기)** '25.2월 말 ~ '25.3월 초
- **(조사 대상)** 당근, 보배드림, 중고나라, 헤이딜러, KB캐피탈, 엔카닷컴 **총 6개社**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중고차 취급)
- **(주요 조사항목)** 매매업자 정보 표출, 본인인증 여부, 비소유자의 판매글 게시 여부, 차량 연계정보 수정가능 여부, 기타 게시항목 등

□ 주요 조사결과

- **(본인인증 여부)** 모든 플랫폼社가 작성자 본인인증 중 (가입시)
- **(소유자 표시)** 당근, KB차차차, 헤이딜러가 소유자 여부를 표출 중
- **(非소유자 업로드)** 모든 플랫폼에서 비소유자도 게시 가능하며, 소유자 동의 확인 절차는 대부분 부재